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9년 7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3.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5. 검토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법률 제14912호('17.10.24.)로 개정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1.~ 4.<생략>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규정되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19. 5. 31.~'19. 6.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 17. <생략>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 ④ <생략>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⑥ ~ ⑦ <생략>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